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19. 7. 23.(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종갑 의원 외 7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신종갑 의원 외 7명
- 제안일 : 2019. 7. 17.
- 회부일 : 2019. 7. 18. (의안번호 : 19 - 97)

2. 제안이유

-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마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안 제5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 설치 등에 따른 기능
(안 제6조 ~ 안 제10조)
-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비밀엄수의무 등(안 제13조)

4.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5. 참고사항<북한이탈주민 현황>

○ 우리구 현황 : 211명

< '19.7.18.기준, 단위: 명 >

동 명	거주자	동 명	거주자	동 명	거주자	동 명	거주자
공 덕	11	대 흥	13	서 교	9	연 남	3
아 현	5	염 리	32	합 정	8	성산1	2
도 화	8	신 수	3	망원1	0	성산2	27
용 강	9	서 강	8	망원2	0	상 암	73

※ 상암동은 우리구 전체 34% 차지(상암동 임대아파트 소재)

○ 서울시 현황 : 6,991명

< '18.11.기준, 단위: 명 >

자치구	거주자	자치구	거주자	자치구	거주자	자치구	거주자
마포구	193	양천구	1,106	동작구	172	도봉구	119
은평구	125			관악구	354	강북구	231
서대문구	165	구로구	280	강남구	319	노원구	1,122
종로구	39	영등포구	116	서초구	139	성북구	149
중 구	55			성동구	140	동대문구	296
용산구	63	금천구	215	광진구	40	중랑구	161
강서구	1,005			송파구	376		
7개	1,645	4개	1,717	8개	1,651	6개	1,978
·서울서부하나센터 가양7종합 사회복지관 ·서울서부고용센터 (취업알선)		서울남부하나센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울동부하나센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북부하나센터 공릉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 지역·실무협의회 현황

- 2001년도부터 운영(최초 설립: 노원구), 20개 자치구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중
- 미구성 5개 자치구 : 종로, 중구, 용산, 광진, 도봉
 - ☞ 북한이탈주민 100인 미만 자치구 【통일부 지침, 제2조(구성) ③항】
- 마포구 2012년 10월 설립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
-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한 상태임.

5.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7인에 의해 발의되어 행정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보호) 제2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항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조기정착 지원과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와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에 따른 기능, 위원장의 직무, 구성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부터 안 13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비밀엄수를 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는 것으로써 해당 법률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통일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자치구별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현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 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해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배려와 관심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색내기 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